

무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행정관리국장”으로 하며, 같은조제5항중 “서울특별시 인사과장과 차치 행정과장”을 “서울특별시 차치 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민상 후보자는 시민단체와 그 하부조직, 또는 10인이상의 시민이 관할 구청장을 거쳐 추천한다.

제11조 제목 “(이중표창의 금지 등)”을 “(이중 표창의 금지)”로 하고, 같은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3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시민의날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기념식 및 행사) ①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모든 시민들이 서울에 대한 공지와 애착심을 갖고 함께 즐기며 기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의 날 기념의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실시한다.

②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시민의 날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운영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3조의 행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시민단체에게 행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시민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운용규정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